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안내문

1. 바우처 자격 결정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제공기관 정보를 참조하여 본인이 직접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제공기관은 이용자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전국 어느 기관이나 선택하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공인력의 변경을 요청하거나 기존 계약을 해지한 다음 새로운 제공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는 정해진 본인부담금을 서비스 이용 전까지 제공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3. 서비스 제공인력은 관련 규정이 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입니다.
4. 바우처 서비스 지원기간과 일일 서비스 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서비스 기간 및 시간

- 1주 5일, 1일 9시간 원칙  
(휴게시간 1시간 포함)
  - \* (예) 09:00~18:00(휴게시간 12:00~13:00)
  - \* 점심 시간 등을 휴게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제공인력 식사는 산모가 제공
- 토요일, 공휴일(일요일, 국경일, 명절 등)은 휴무 원칙
- 이용자의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서비스 제공 요일 및 시간을 원칙과 달리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공기관과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 (계약에 반영 필요)
- 다만, 이 경우에도 22시~07시 시간대에는 바우처 서비스 제공은 불가

### 지원기간

-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표준 서비스기간 상이
- 표준 서비스 시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 가능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기간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5일	10일	15일
	둘째아	10일	15일	20일
	셋째아 이상	10일	15일	20일
쌍태아	둘째아	10일	15일	20일
	셋째아 이상	15일	20일	25일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 산모	구분 없음	15일	20일	25일

\* 출산 순위는 산모의 출산 횟수 기준이 아니며, 첫째, 둘째, 셋째 등과 같이 아이가 해당 가정에서 갖게 되는 차례 또는 순서를 말함.

#### <예시>

- ① 첫 출산이 쌍태아인 경우 → 둘째아 해당,
- ② 단태아 출산 후 쌍태아 출산하거나 쌍태아 출산 후 단태아 출산한 경우 → 셋째아 이상 해당

- 같은 서비스기간이라도 태아유형, 출산 순위, 소득구간 등에 따라 정보지원금에 차이가 있으므로, 제공기간과 상담 시 반드시 서비스 가격 및 본인부담금을 확인 후 상품 선택, 계약 체결 진행

5. 정부 바우처로 제공하는 표준 서비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 표준서비스 이외 부가서비스가 필요한 이용자에게서는 별도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산모를 위한 서비스

- 산모 신체 상태 조사
- 산후 부종관리, 산후 체조지원
- 산모 영양관리 및 식사준비
- 좌욕지원, 산모 위생관리
- 수유, 산후회복, 신생아 케어 관련 산모 교육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 산모·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 산모·신생아 의류 등 세탁
- 상담 및 말벗

### 신생아를 위한 서비스

- 신생아 건강상태 확인
- 신생아 청결관리
- 신생아 위생관리
- 예방접종 지원
- 감염 예방 및 관리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 표준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은 서비스(부가서비스 예시)

- 산모·신생아 주생활 공간 이외 청소
- 다른 가족 방·화장실, 공용공간(현관, 서재, 드레스룸, 베란다, 창고, 유리창, 마당 등), 수납공간(싱크대, 냉장고, 장롱, 찬장, 신발장 등), 기타 비일상적인 집안 대청소
- 산모·신생아 의류 등 이외 세탁
- 다른 가족 빨래, 고가의류, 대형 빨래(침구, 커튼, 신발류, 가방류, 부피 큰 계절 옷, 목은 빨래 등)
- 산모·신생아 이외 가족·친지 식사 준비, 자택 외 다른 장소에서의 식사준비, 잔치음식, 저장식품(김치·장류, 장아찌 등), 차 접대 수준을 넘는 손님 접대
- 기타
- 부피가 크거나 무거운 가수/물건 옮기기
- 큰 아이 또는 다른 가족 돌보기
- 운전 대행
- 애완동물 돌보기 등

6. 이용자와 종사자는 서로 인격을 존중하고 신뢰하여야 하며, 더 좋은 서비스를 받고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자 준수사항

- ① 이용자는 제공인력의 인격과 전문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 ② 이용자는 서비스 표준 및 계약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 ※ 산모 및 신생아 외 다른 가족에 대한 돌봄·가사활동 지원 등 부가서비스는 바우처 표준서비스에 미포함, 부가서비스를 추가 구매한 경우에만 서비스 요청 가능
- ③ 이용자가 제공인력에게 서비스를 요청할 때에는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정중하게 요청하셔야 합니다.
- ④ 제공인력에게는 공식적인 호칭(관리사님 등)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⑤ 욕설, 신체적 폭력 등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 ※ 구타 등 신체적 폭력을 행할 경우 서비스 이용 중지는 물론 민·형사사야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언어·신체적 폭력의 범주>**

- (언어적폭력) 욕설, 협박, 위협 등 \* “야.”, “어이.” 등은 인격을 무시하는 호칭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 (신체적폭력) 밀기, 역살잡기, 붙잡기, 뺨때리기, 깨물기, 침 뱉기, 목 조르기, 물건 던지기, 주먹이나 발로 차기, 칼 겨눔, 찌름 등 치명적인 수준의 행위 등

- ⑥ 제공인력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특히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이나 과도한 노출, 성적 농담 등으로 불쾌감을 주는 행위도 성희롱에 속합니다.
  - ※ 이용자 및 그 가족의 성희롱 행위가 밝혀지는 경우 해당 제공인력은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정도에 따라 서비스 이용 자격 박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성희롱·성폭력 행위의 범주>**

- (시각적성희롱) 음란한사진·출판물, 성적인 몸짓, 과도한 신체 노출
- (언어적 성희롱) 음담패설, 성적인 행위를 암시하는 말이나 농담
- (신체적성희롱) 성적 접촉, 포옹, 애무, 추행, 강간
- (기타) 음란물을 보여주거나 함께 보자는 권유, 데이트나 강제 강요, 술자리 시중 요구 등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언어나 행동 등

- ⑦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시작과 종료 시각을 지켜주시고, 제공인력이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쉴 수 있는 휴게시간(1일 1시간)을 반드시 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